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
- 집합투자업자 명칭: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 · 지점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co.kr 및 멀티에셋자산운용(주) multiasset.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 일: 2015.10.31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6.8.31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이 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4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4
3. 모집예정금액	1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4
5. 인수에 관한 사항	1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6
4. 집합투자업자	1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7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2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8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3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5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8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4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44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9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9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0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0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0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5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8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59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 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5.10.31)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73603)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 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풀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브라질 관련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02-3774-8000)				
모집(판매)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효력발생일	2016.8.31	준속 기간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가입자격	판매수 수료	환매수 수료	보수(연. %)				
				판매	운용 등	기타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A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90일미 만: 이익 금의 70%	0.200	0.7675	0.000	0.9675	0.9965
	제한 없음			0.700		0.000	1.4675	1.4968
	일임형종합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0.00		-	0.7675	0.7675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0.300	0.300		-	1.0675	1.0675
	납입금액이 100 억 원 이상 300 억원 미만 법인			0.1500		-	0.9175	0.9175
	인터넷뱅킹			0.6000		0.000	1.3675	1.3967
C-F	집합투자기구, 기금, 보험특별계정 및 일반계정, 전문투자자,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3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 의 0.15%이내	0.0300		-	0.7975	0.7975
	펀드온라인코리아			0.1500		-	0.9175	0.9460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0.3600		-	1.1275	1.1741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지급시기 : 매 3 개월 후금 및 전부해지시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 <u>오후 5 시 이전</u> : 자금 납입일의 <u>제 3 영업일(T+2)</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1) <u>오후 5시 이전</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청구일로부터 <u>제4영업일(T+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u>제8영업일(T+7)</u>에 환매대금을 지급
--------------	---	--------------	--

	(2) <u>오후 5시 이후</u> : 자금 날입일로부터 제4영업일 (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u>오후 5시 이후</u>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9영업일(T+8)에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multiasset.miraeasset.com)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이하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헛지하며, USD(\$) 대비 이종 통화(브라질 헤알화) 환포지션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멀티에셋 삼바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운용 개요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 등에 투자
-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US 달러 환산 포지션의 90% 수준에 대해 원/달러 환헷지 수행

2. 주요 편입대상 자산

- 브라질 연방, 지방정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금융기관(브라질 내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포함)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채권

※ 상기 종목은 브라질 현지 또는 해외거래 채권으로서 신용등급 A(브라질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 이상 또는 BB-(S&P, Moody's, Fitch 등 국제금융기관이 평가한 국제신용등급) 이상인 증권을 대상으로 함

(단,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편입 가능)

- 국내 신용등급 A이상인 단기 채권
- 국내 콜론,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유동성

3. 채권 포트폴리오 Guidelines

- 개별 채권의 만기: 10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5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신용등급: AA(브라질 현지 평가기관 등급), BB(상기국제평가기관 등급)

(단,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편입 가능)

- 채권포트폴리오의 개별종목 한도: 종목당 10% 이내

※ 상기 운용사항은 시장환경 및 운용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2015.10.3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운용규모	
신민석	1979	과장	6개	14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8~ 현재 멀티에셋자산운용 운용 2팀 - 07.11~ 12.08 유리자산운용 퀸트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11.01 ~15.10.31	13.11.01 ~14.10.31	12.11.01 ~13.10.31	11.11.01 ~12.10.31	10.11.01 ~11.10.31
통합 클래스	-28.81	1.91	-7.41	-3.16	11.79
A 클래스	-29.54	0.94	-8.32	-4.10	10.73
C1 클래스	-29.92	0.44	-8.79	-4.58	10.18
C-e 클래스	-29.84	0.54	-8.69	-4.49	10.29
S 클래스	-29.50	-0.69			

- 주1)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 2) 상기 수익률은 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5.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종류C2, C3, C4, C-F 수익증권은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5.10.31) 현재 미설정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4) 종류Crp 수익증권은 6개월 미만 설정으로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의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섹터 위험	브라질이라는 이머징 마켓의 특정 국가에 투자하므로 세계 주요 시장의 움직임과 상이한 고유의 가격 동향으로 전체 시장의 투자 성과와 비교하여 수익률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이하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위험 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 12.73 %

<멀티에셋자산운용회사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며, 성과평가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

항 목	대차대조표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15.09.11)	(2014.09.11)	(2013.09.11)
운용자산	3,232,878,875	5,064,527,705	5,347,692,132
증권	3,188,822,103	5,015,819,085	5,201,911,53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4,056,772	48,708,620	145,780,60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216	342,720	1,107,090,250
자산총계	3,232,894,091	5,064,870,425	6,454,782,38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720	310,567	1,092,822,738
부채총계	3,720	310,567	1,092,822,738
원본	4,989,137,011	5,409,507,255	6,362,182,411
수익조정금	27,153,314	-49,625,712	-558,170,131
이익잉여금	-1,783,399,954	-295,321,685	-442,052,636
자본총계	3,232,890,371	5,064,559,858	5,361,959,64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14.09.12 – 2015.09.11)	(2013.09.12 – 2014.09.11)	(2012.09.12 – 2013.09.11)
운용수익	-1,465,206,117	555,058,116	-121,736,925
이자수익	691,762	1,217,037	5,686,00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465,897,879	553,841,079	-127,422,931
기타수익	71,133	216,319	90,067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23,340	147,080	411,180
당기순이익	-1,465,258,324	555,127,355	-122,058,03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 주소)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 (73603)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4820	73604	79379	90622	90623
(종류) 클래스	종류C-e	종류C-F	종류 S	종류 Crp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9511	75934	AQ829	B581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까지 모집 가능(1좌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http://multiasset.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73603)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4820	73604	79379	90622	90623
(종류) 클래스	종류C-e	종류C-F	종류 S	종류 Crp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9511	75934	AQ829	B581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8.8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7.11.9	약관변경 – 클래스 추가(종류 C-I, C3, C4)에 의한 변경
2009.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 변경 산은 삼바 브라질 채권 자투자신탁->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009.7.1	규약 변경 – 신탁업자보수율 변경 (연 0.07% -> 0.055%)
2010.3.16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변경 전: T+1일, 변경 후: T+2일)
2010.5.3	판매보수 인하(정율식)
2010.5.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유재홍, 변경 후: 서기원)
2010.11.3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규약변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2.9.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서기원)
2013.11.28	다른자투자신탁 추가(KDB 삼바브라질 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14.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2015.1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신민석)
2016.5.4	-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산은자산운용㈜->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투자신탁 명칭 변경(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16.7.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16.8.31	- 해외 투자자문 계약 종료 - 벤치마크 지수 삭제 및 투자가능 채권의 신용등급 변경

나. 모두자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채권]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 변경 산은 삼바 브라질 채권 모투자신탁-> 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009.5.25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상훈 -> 김종육
2009.6.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유재홍

	비교지수 변경: JPMorgan GBI-EM Brazil Unhedged in USD Index × 90% + Call × 10% → JPMorgan Global Bond Index – Emerging Market Broad Brazil USD Unhedged Index × 90% + Call × 10%
2010.3.16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변경 전: T+1일, 변경 후: T+2일)
2010.5.2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유재홍, 변경 후: 서기원)
2011.1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집합투자규약변경 – 법 시행령 개정사항(임의해지 내용 변경) 반영
2012.9.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서기원)
2013.11.28	다른자투자신탁 추가(KDB 삼바브라질 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14.2.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서기원, 변경 후: 한철기)
2015.1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한철기, 변경 후: 신민석)
2016.5.4	-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산은자산운용㈜→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투자신탁 명칭 변경(산은 삼바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6.7.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16.8.31	- 해외 투자자문 계약 종료 - 벤치마크 지수 삭제 및 투자가능 채권의 신용등급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16 층 (대표전화 : 02-3774-80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2015.10.3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 수	운용규모	
신민석	1979	과장	6개	142억	- 15.08~ 현재 멀티에셋자산운용 운용 2 팀 - 07.11~ 12.08 유리자산운용 퀸트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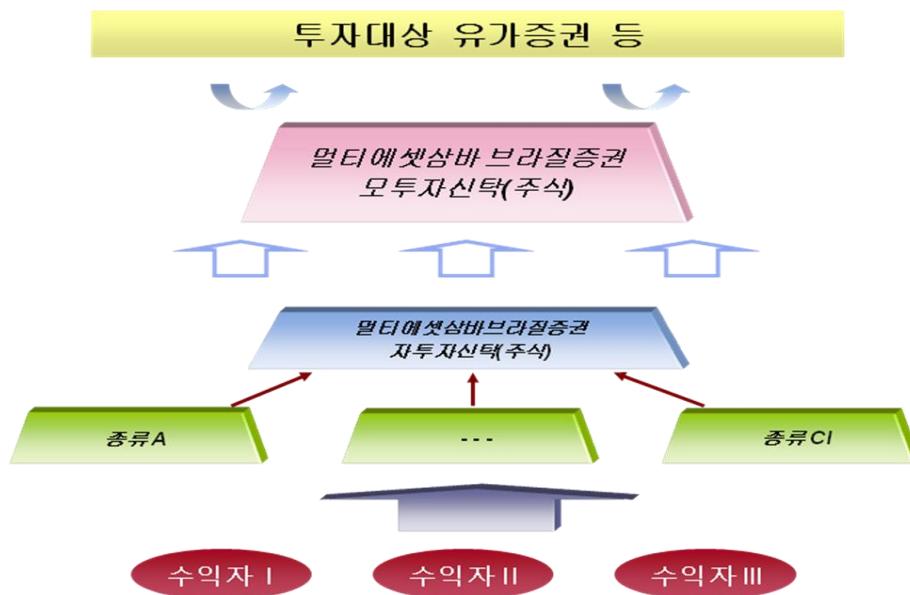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유재홍	2009.6 ~ 2010.4
서기원	2010.5 ~ 2010.11
한철기	2010.11 ~ 2012.9
서기원	2012.09 ~ 2014.02
한철기	2014.2 ~ 2015.9.30
신민석	2015.10.1 ~ 현재

주1) 2015년 10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종류 C3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인 경우
종류 C4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인 법인
종류 C-e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F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및 일반계정,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3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종류 Crp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판매수수료>

구 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	매입 시
종류 C1, C2, C3, C4, C-e, C-F, Cr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종류 S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 [채권] (73602)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 [주식] (72355)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 [채권] (73603)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	-
멀티에셋삼바브라질주식30증권자 투자신탁 [채권합] (72359)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
멀티에셋삼바브라질연금저축증권 자투자신탁 [채권] (AM845)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멀티에셋 삼바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p>주요투자대상</p> <p>채무증권(해외채권 60%이상)</p>
	<p>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p>
멀티에셋삼바브라질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p>■ 주요 편입대상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연방, 지방정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금융기관(브라질 내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포함)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채권 <p>※ 상기 종목은 브라질 현지 또는 해외거래 채권으로서 신용등급 A(브라질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 이상 또는 BB-(S&P, Moody's, Fitch 등 국제금융기관이 평가한 국제신용등급) 이상인 종권을 대상으로 함</p> <p>(단,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편입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신용등급 A이상인 단기 채권 - 국내 콜론,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유동성 <p>■ 채권 포트폴리오 Guidelin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채권의 만기: 10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5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신용등급: AA(브라질 현지 평가기관 등급), BB(상기국제평가기관 등급) <p>(단,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편입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포트폴리오의 개별종목 한도: 종목당 10% 이내 <p>■ 환헷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으로 원/USD 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단, USD(\$) 대비 이종통화 포지션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이하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하며, USD(\$) 대비 이종 통화(브라

질 헤알화) 환포지션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및 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수익증권 (모투자신탁)	100% 이하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②	해외채권	60% 이상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위 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단,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유가증권에 한한다)
③	어음 및 해외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상기 어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단,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유가증권에 한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및 해외자산유동 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상기 자산유동화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단,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유가증권에 한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외국법령에 의거 하여 발행된 상장지 수집합투자증권을 포 함)에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u>외국법령에</u> <u>의하여</u> <u>발행된</u> <u>증권으로서</u> <u>집합투자증권</u> <u>또는</u> <u>투자회사가</u> <u>발행한</u> <u>주식과</u> <u>동일하거나</u> <u>유사한</u> <u>성질을</u> <u>갖는</u> <u>것</u> (해외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 시행령 제 45 조제 2 호다록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⑧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⑨	장내파생상품	10%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 른 위험평가액)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으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
⑩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환율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선도환거래
⑪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익증권에의 투자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의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p>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u>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u>)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법 제 234 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③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를 초과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⑦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 후순위채권	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p>-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① 내지 ④의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및 한도의 ⑤ 내지 ⑩, 위의 ② 내지 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②의 본문, ③ 내지 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이하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헛지하며, USD(\$) 대비 이종 통화(브라질 해알화) 환포지션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멀티에셋 삼바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운용 개요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 등에 투자
- 통화선물을 등을 이용하여 US 달러 환산 포지션의 90% 수준에 대해 원/달러 환헷지 수행

2. 주요 편입대상 자산

- 브라질 연방, 지방정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금융기관(브라질 내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포함)이 발행한 채권
 -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채권
- ※ 상기 종목은 브라질 현지 또는 해외거래 채권으로서 신용등급 A(브라질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 이상 또는 BB-(S&P, Moody's, Fitch 등 국제금융기관이 평가한 국제신용등급) 이상인 증권을 대상으로 함

(단,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편입 가능)

- 국내 신용등급 A이상인 단기 채권
- 국내 콜론,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유동성

3. 채권 포트폴리오 Guidelines

- 개별 채권의 만기: 10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5년 이하
 -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신용등급: AA(브라질 현지 평가기관 등급), BB(상기국제평가기관 등급)
- (단,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편입 가능)**
- 채권포트폴리오의 개별종목 한도: 종목당 10% 이내

* 상기 운용사항은 시장환경 및 운용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대상 국가(브라질) 현황

일반사항	국명	브라질 연방 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면적	851 만km ² (한반도의 약 37 배)
	수도	브라질리아 (Brasília, 인구 233 만 명)
	인구	약 1억 9천만명
경제 현황 (2014년)	GDP	2.24 조불
	1 인당 GDP	11,067 불
	경제성장률	0.21%
	교역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251 억불 - 수입 2,291 억불
	실업률	5.5%
	물가상승률	6.3%
	외국인 투자	46,215 억불

* 산업구조

- 상강하박형 산업구조, 중남미 국가중 제조업 기반 발달
 - 세계적 다국적기업 진출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 현지투자 역사가 50년이 넘는 기업 다수 존재
 - 중소기업 미발달로 부품산업 취약
 - 브라질정부의 고 이자율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부재로 중소기업 미발달 하였으나 1998년 브라질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 중
 - 주요 수출품
 - 기계류, 자동차, 철강, 육류, 곡물, 철광석, 광물성연료, 사료, 항공기, 전기기기, 목재, 설탕, 신발, 커피, 알루미늄 등
 - 교역품
 - 주요 수입품
 -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유기화학품,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제품, 의료용품 등
-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브라질 중앙은행(BACEN), 외교부

* 산업동향

브라질은 1940년대부터 추진해 온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취해진 수입개방정책으로 수입품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탈 산업화 과정이 가속화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바 있으며 2002년에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브라질의 산업 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농업 및 광산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따라 기존의 1차 산업을 유지하면서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석유 및 석유화학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바이오 에너지 산업 외에도 서비스업, IT, BT, 나노 등 첨단 기술 산업, 금융업 등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 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 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 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 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 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며, 성과 평가 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환위험 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해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평가액의 90% 수준 [USD(\$) 환산평가액 기준] 환헷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위험 헛지

- 목표 환헷지비율: 신탁재산의 90% 수준 [USD(\$) 환산평가액 기준]
- 원칙적으로 모펀드 해외투자 포지션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헛지. 단, USD 대비 이종 통화(브라질 해알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환헷지는 원화 대비 USD의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USD의 가치가 원화대비 급상승(원화환율이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환차손을 충당하기 위해 불리한 시장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해외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등 자산운용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결과적으로 예상밖의 수익률 하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외환당국의 개입 기타 요인으로 인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간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일시적으로 동 괴리폭만큼 기준가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환헷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헷지 비율 및 비용>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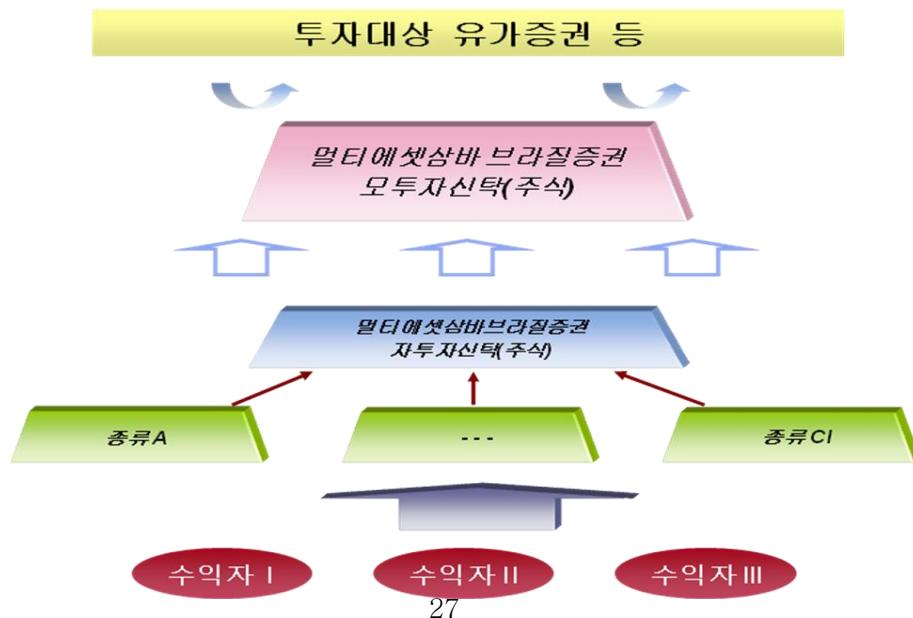
기준일(2015.09.11) 현재 환헷지 비율	(2014.09.12 ~ 2015.09.11) 환헷지 비용
94.609294	885,195

※ 환헷지비율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환헷지 비율 및 비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 재산의 100%이하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의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

	<p>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특히, 일부 신증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시장 섹터 위험	브라질이라는 이머징 마켓의 특정 국가에 투자하므로 세계 주요 시장의 움직임과 상이한 고유의 가격 동향으로 전체 시장의 투자 성과와 비교하여 수익률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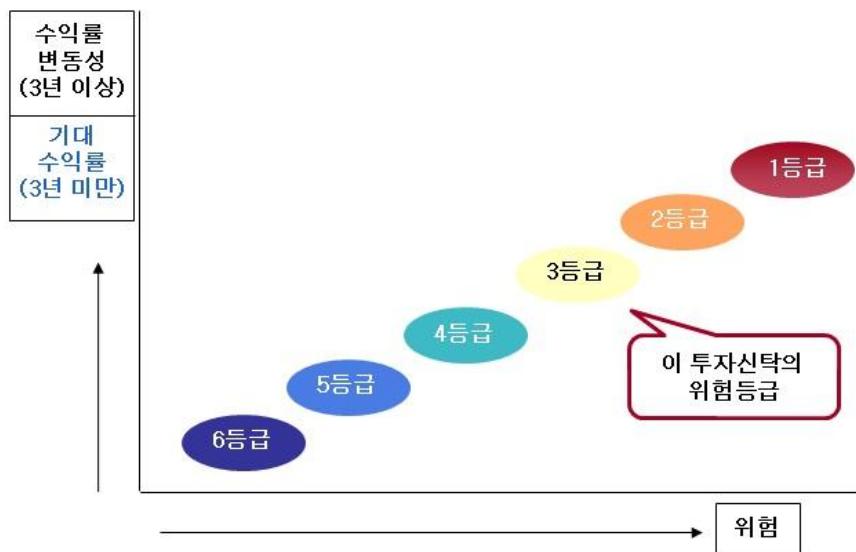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브라질 및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브라질 관련 외화표시채권(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주로(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이하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위험 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12.73%

<멀티에셋자산운용회사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음
종류 C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종류 C3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인 경우
종류 C4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 300 억원 미만인 법인
종류 C-e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F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및 일반계정,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3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종류 Crp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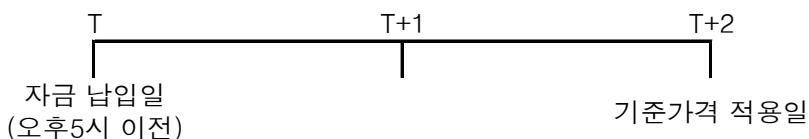
<판매수수료>

구 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	매입시
종류 C1, C2, C3, C4, C-e, C-F, Crp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종류 S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 가능한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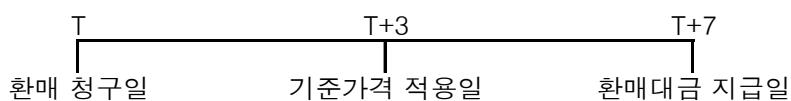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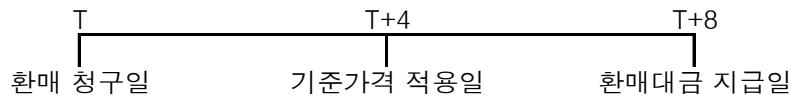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시간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 환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T+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T+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 분	수수료율	비고
종류	종류A, C1, C2, C3, C4, C-e, C-F, S	종류 Crp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 가능한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판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판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판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판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판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판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판매일에 판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판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판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판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협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판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또는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판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판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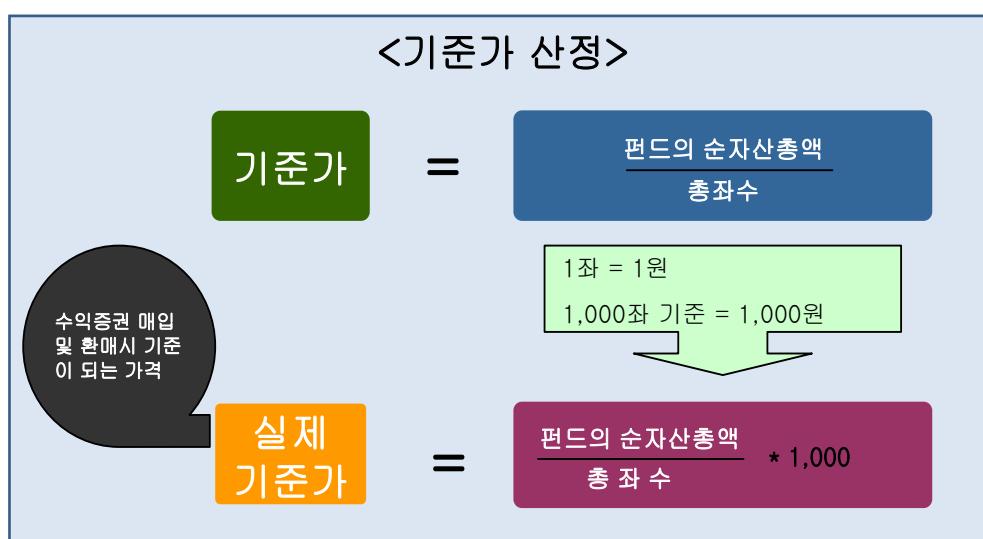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multiasset.miraeasset.com)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상장자산유동화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한정)
비상장자산유동화증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자산유동화증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S	종류 Crp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 액의 0.5%	-	-	-	-	-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	-	-	-	3년미 만 환 매시 환매금 액의 0.15% 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S	종류 Crp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									매 3개월 후금 및 전부 해지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수	0.20	0.70	0.00	0.30	0.15	0.60	0.03	0.15	0.36		
신탁업자 보수	0.055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25										
기타 비용	0.000	0.000	-	-	-	0.000	-	-	-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9675	1.4675	0.7675	1.0675	0.9175	1.3675	0.7975	0.9175	1.1275	-	
합성총보수 비용	0.9965	1.4968	0.7675	1.0675	0.9175	1.3967	0.7975	0.9460	1.1741	-	
증권 거래비용	0.0639	0.0646	-	-	-	0.0674	-	0.0773	0.0000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기간(2014.09.12 ~ 2015.09.11)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2014.09.12 ~ 2015.09.11)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

니다.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종류 C2, C3, C4, C-F 수익증권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5.10.31) 현재 미설정되었으므로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합성총보수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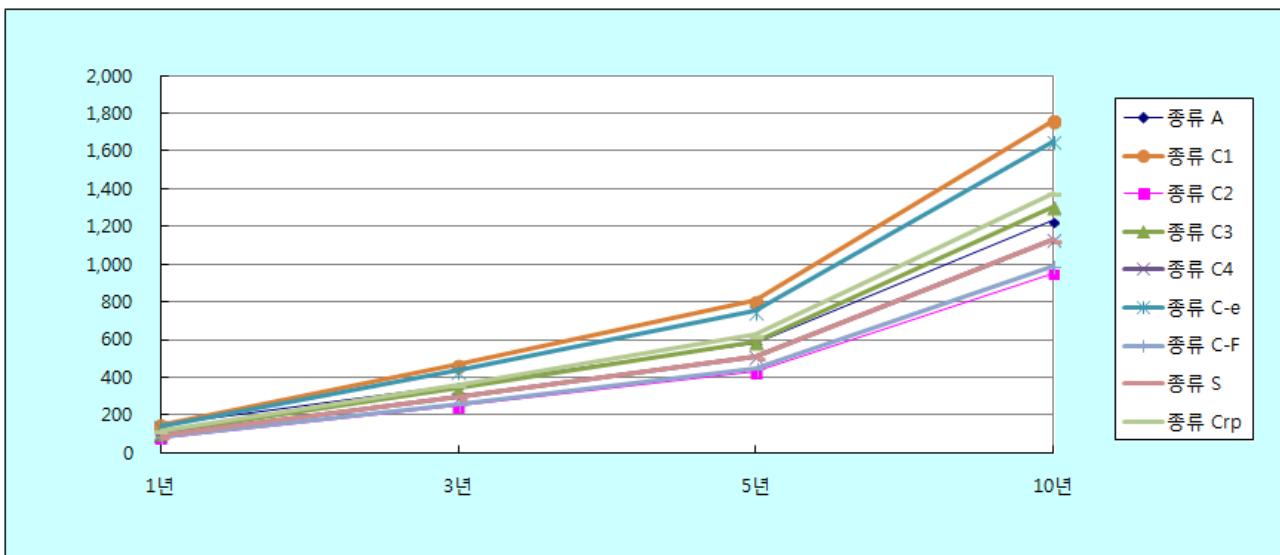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9	357	582	1,2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2	366	598	1,264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0	467	807	1,76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3	476	822	1,797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	246	428	95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9	246	428	954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341	592	1,30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	341	592	1,308
종류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294	510	1,1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294	510	1,132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	436	753	1,6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3	445	769	1,685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256	444	9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2	256	444	990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294	510	1,1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7	303	526	1,166
종류 Cr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360	624	1,3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0	375	649	1,43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

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S 수익증권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여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5월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위 (1)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3)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4)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9)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text{사업연도 총소득} - \text{국내비과세소득}) / (\text{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거나,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

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2015년1월1일부터)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 ③ 연금 인출방식에 따른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 기(2014.09.12 – 2015.09.1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7 기(2013.09.12 – 2014.09.1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6 기(2012.09.12 – 2013.09.1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항 목	대차대조표		
	제 8 기 (2015.09.11)	제 7 기 (2014.09.11)	제 6 기 (2013.09.11)
운용자산	3,232,878,875	5,064,527,705	5,347,692,132
증권	3,188,822,103	5,015,819,085	5,201,911,53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4,056,772	48,708,620	145,780,60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216	342,720	1,107,090,250
자산총계	3,232,894,091	5,064,870,425	6,454,782,38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720	310,567	1,092,822,738
부채총계	3,720	310,567	1,092,822,738
원본	4,989,137,011	5,409,507,255	6,362,182,411
수익조정금	27,153,314	-49,625,712	-558,170,131
이익잉여금	-1,783,399,954	-295,321,685	-442,052,636
자본총계	3,232,890,371	5,064,559,858	5,361,959,64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14.09.12 – 2015.09.11)	(2013.09.12 – 2014.09.11)	(2012.09.12 – 2013.09.11)
운용수익	-1,465,206,117	555,058,116	-121,736,925
이자수익	691,762	1,217,037	5,686,00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465,897,879	553,841,079	-127,422,931
기타수익	71,133	216,319	90,067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23,340	147,080	411,180
당기순이익	-1,465,258,324	555,127,355	-122,058,03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경우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 A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9.12 – 2015.09.11	14	13	3	2	6	4	12	7
2013.09.12 – 2014.09.11	17	14	2	2	5	4	14	13
2012.09.12 – 2013.09.11	26	24	1	1	10	9	17	1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종류 C1 수익증권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9.12 – 2015.09.11	35	31	2	1	5	4	32	19
2013.09.12 – 2014.09.11	40	32	1	0	6	4	35	31
2012.09.12 – 2013.09.11	217	203	1	1	178	173	40	3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종류 C-e 수익증권

(단위: 억화,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9.12 – 2015.09.11	6	6	1	1	2	2	6	4
2013.09.12 – 2014.09.11	8	7	2	1	4	3	6	6
2012.09.12 – 2013.09.11	16	15	2	2	10	10	8	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종류 S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9.12 – 2015.09.11	0	0	4	3	1	1	3	2
2013.09.12 – 2014.09.11	0	0	0	0	0	0	0	0

마. 종류 C-F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9.12 – 2013.09.11	0	0	13	13	13	11	0	0

바. 종류 Crp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9.12 – 2015.09.11	0	0	0	0	0	0	0	0

사. 종류 C2, C3, C4수익증권: 연도별 기간 중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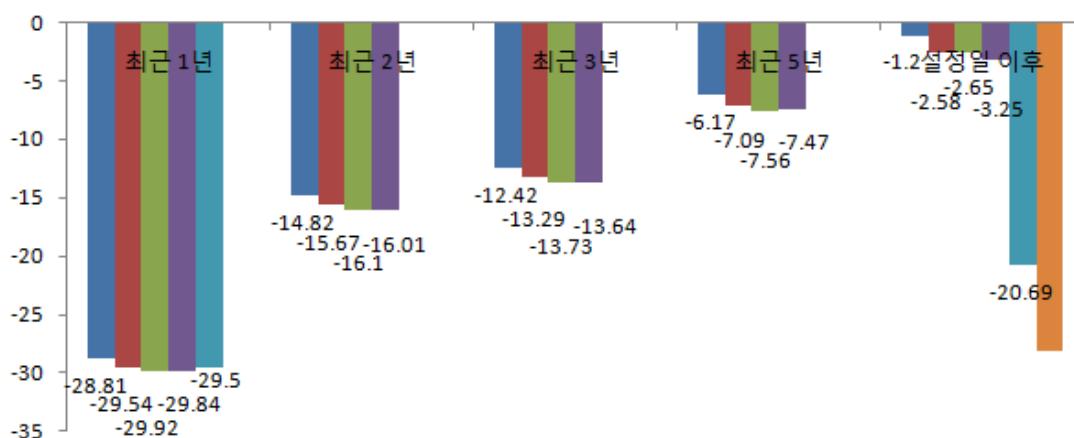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11.01 ~15.10.31	13.11.01 ~15.10.31	12.11.01 ~15.10.31	10.11.01 ~15.10.31	
통합 클래스	-28.81	-14.82	-12.42	-6.17	-1.20
A 클래스	-29.54	-15.67	-13.29	-7.09	-2.58
C1 클래스	-29.92	-16.10	-13.73	-7.56	-2.65
C-e 클래스	-29.84	-16.01	-13.64	-7.47	-3.25
S 클래스	-29.50				-20.69
Crp 클래스					-28.14

주1) 상기 수익률은 증권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5.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C2, C3, C4, C-F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5.10.31) 현재 미설정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채권] ■ A클래스 ■ C1클래스 ■ C-e 클래스 ■ S클래스 ■ Crp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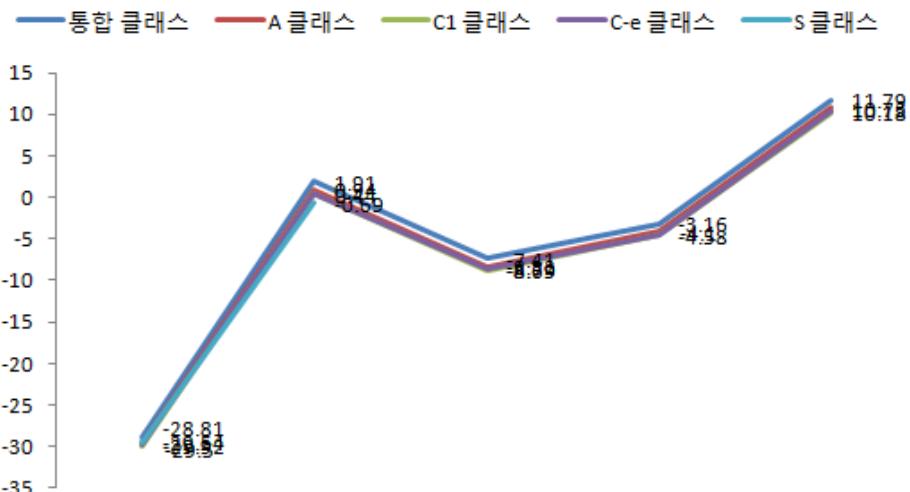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11.01 ~15.10.31	13.11.01 ~14.10.31	12.11.01 ~13.10.31	11.11.01 ~12.10.31	10.11.01 ~11.10.31
통합 클래스	-28.81	1.91	-7.41	-3.16	11.79
A 클래스	-29.54	0.94	-8.32	-4.10	10.73
C1 클래스	-29.92	0.44	-8.79	-4.58	10.18
C-e 클래스	-29.84	0.54	-8.69	-4.49	10.29
S 클래스	-29.50	-0.69			

주1)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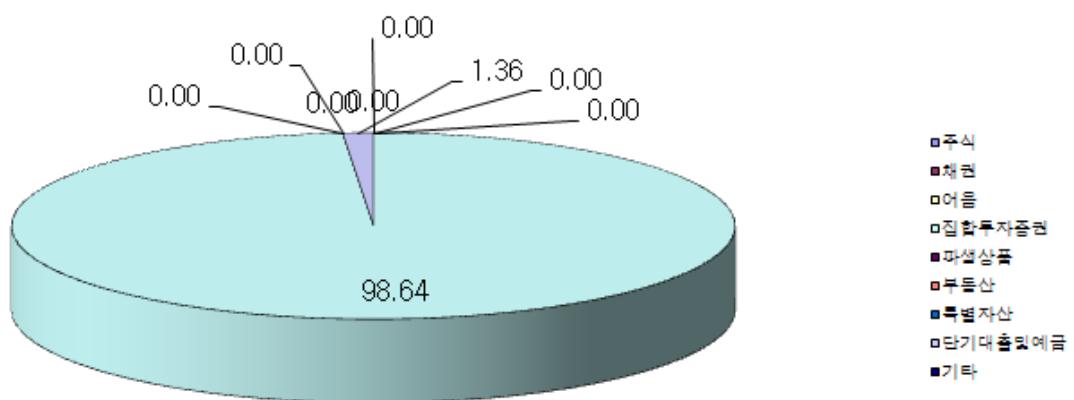
- 2) 상기 수익률은 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15.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종류C2, C3, C4, C-F 수익증권은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5.10.31) 현재 미설정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4) 종류Crp 수익증권은 6개월 미만 설정으로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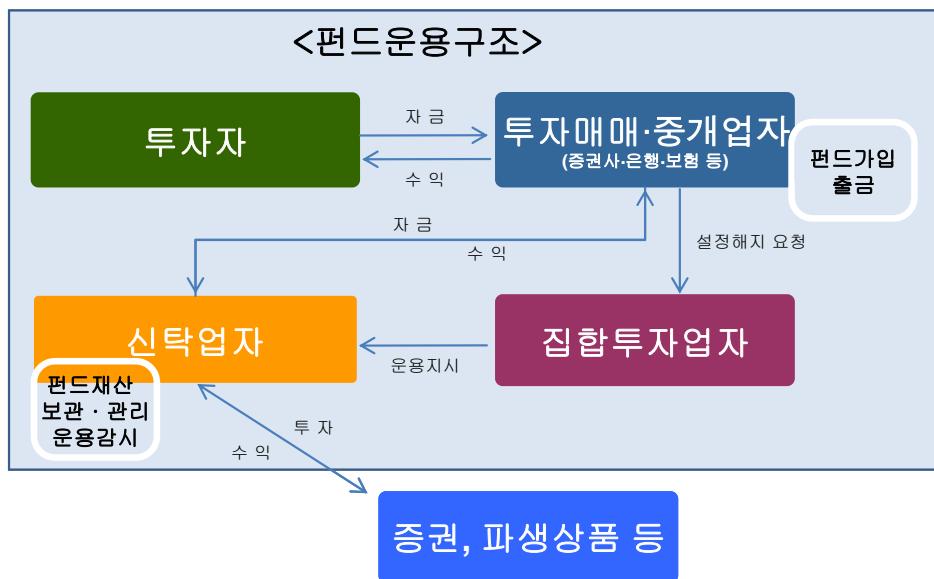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5.09.11 기준 / 단위: 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	0	0	0	32	0	0	0	0	0	0	0	32
W	(0.00)	(0.00)	(0.00)	(98.64)	(0.00)	(0.00)	(0.00)	(0.00)	(0.00)	(1.36)	(0.00)	(100.00)
합계	0	0	0	32	0	0	0	0	0	0	0	32
	(0.00)	(0.00)	(0.00)	(98.64)	(0.00)	(0.00)	(0.00)	(0.00)	(0.00)	(1.36)	(0.00)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16층 (대표전화 : 02-3774-8000, http://multiasset.miraeasset.com)
회사 연혁	1996. 5 회사설립(서울투자신탁운용)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투자일임업허가 1998.12 자산운용회사등록 2000.06 증자(최대주주 대우증권 변경) 2004.05 증자(최대주주 산업은행 변경) 2004.07 산은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6.04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89 억원(2016년 4월말 기준)
주요주주현황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익자명부 작성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5.3.31	'14.3.31	항 목	'14.4.1~ '15.3.31	'13.4.1~ '14.3.31
1. 현금및예치금	59,088	34,701	1. 영업수익	3,559	2,924
2. 증권	5,603	25,663	2. 영업비용	2,809	3,042
3. 대출채권	447	464	3. 영업이익	750	-118
6. 유형자산	136	206	4. 영업외수익	0	34
7. 무형자산	-	-	5. 영업외비용	0	0
8. 기타자산	18,190	17,892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751	-85
9. 당기법인세자산			7. 법인세비용	183	-19
10. 이연법인세자산	5,080	4,955			
자산총계	88,545	83,882	당기순이익	568	-66
1. 퇴직급여부채	30	30			
2. 충당부채	16,484	19,266			
3. 당기법인세부채	-	-			
4. 기타부채	8,494	2,592			
부채총계	25,009	21,888			

라. 운용자산 규모

(2015.10.30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실물	특별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4,017	3,949	1,836	14,003	382	29,064	5,107	381	-	8,042	66,78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1가 101-1 (☎02-1588-1111)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2002년 12월 통합 '하나은행' 출범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FN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건물 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 화빌딩 4층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의해지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신탁 원본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임의해지할 경우에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고 임의해지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가능하다고 통지합니다. 임의해지일 이전에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을 시장에서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며, 해지일 당일에 투자자의 수익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지점,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http://multiasset.miraeasse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상기의 수시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hr/> <p>②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hr/> <p>③중개회사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 합니다. -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이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 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판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만약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가 펀드 매입 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